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트밸류웨이언금저축증권투자신탁 [주식]

□ **변경 사항**: ① 책임운용인력 변경 (한규민 → 오대식)

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: 2022. 10. 7.

□ **변경 내용**: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요약정보
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2022. 8. 31. 기준
운용전문인력	책임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한규민 -	오대식 2022. 8. 31. 기준
투자자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설



트러스트자산운용

		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<u>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</u>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5 시 30 분 이전: <u>제 2 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매입 15 시 30 분 경과후 : <u>제 3 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매입	15 시 30 분 이전: <u>2 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매입 15 시 30 분 경과후 : <u>3 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5 시 30 분 이전: <u>제 2 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<u>제 4 영업일</u> 에 지급 15 시 30 분 경과후: <u>제 3 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<u>제 4 영업일</u> 에 지급	15 시 30 분 이전: <u>2 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<u>4 영업일</u> 에 지급 15 시 30 분 경과후: <u>3 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<u>4 영업일</u> 에 지급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책임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한규민</u> -	<u>오대식</u> <u>2022. 8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책임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한규민</u> -	<u>오대식</u> <u>2022. 8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업데이트	<u>책임운용역</u> <u>한규민 : 2020.08.26~현재</u> <신 설>	<u>책임운용역</u> <u>한규민 : 2020.08.26~</u> <u>2022.10.06</u> <u>책임운용역</u> <u>오대식 : 2022.10.07~현재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는 모투자신탁의 운용 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 역]	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업데이트	<u>책임운용역</u> <u>한규민 : 2020.08.26~현재</u> <신 설>	<u>책임운용역</u> <u>한규민 : 2020.08.26~</u> <u>2022.10.06</u> <u>책임운용역</u> <u>오대식 : 2022.10.07~현재</u>


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가) (생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생략)	<u>〈삭제〉</u>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 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</u>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<u>〈삭제〉</u> <u>〈삭제〉</u>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</u>

		① ~ ⑤ (생략) (나) (생략)	<u>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</u>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(나) (현행과 같음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<u>2022. 8. 31. 기준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 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 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 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</u>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

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개정사항 반영	준가격 ① 15 시 30 분[오후 3 시 30 분]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 2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5 시 30 분[오후 3 시 30 분]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 3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③ (생략)	준가격 ① 15 시 30 분[오후 3 시 30 분]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5 시 30 분[오후 3 시 30 분]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③ (현행과 같음)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5 시 30 분[오후 3 시 30 분]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 2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 4 영업일</u>에 환매금액 지급 ② 15 시 30 분[오후 3 시 30 분]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 3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 4 영업일</u>에 환매금액 지급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5 시 30 분[오후 3 시 30 분]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2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4 영업일</u>에 환매금액 지급 ② 15 시 30 분[오후 3 시 30 분]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3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4 영업일</u>에 환매금액 지급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8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8. 31. 기준</u>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제 5 영업일</u>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5 영업일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생략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(2) ~ (3) (생략)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(2) ~ (3) (현행과 같음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

	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~ ⑦ (생략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생략)	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현행과 같음)
--	--	--